

**1 남원중앙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안내**

순	프로그램	강사수	지도대상	운영예정시간	비고
1	로봇과학	1명	1~6학년	주 2일(주당 6시간)	개인위탁
2	바이올린	1명	1~6학년	주 2일(주당 4시간)	개인위탁
3	컴퓨터	1명	1~6학년	주 3일(주당 9시간)	개인위탁
4	주산	1명	1~6학년	주 2일(주당 6시간)	개인위탁
5	한자	1명	1~6학년	주 3일(주당 9시간)	개인위탁
6	영어	1명	1~6학년	주 3일(주당 9시간)	개인위탁
7	미술	1명	1~6학년	주 4일(주당 10시간)	개인위탁
8	바둑	1명	1~6학년	주 2일(주당 6시간)	개인위탁
9	공예	1명	1~6학년	주 2일(주당 6시간)	개인위탁
10	생명과학	1명	1~6학년	주 2일(주당 6시간)	개인위탁
11	축구	1명	1~6학년	주 2일(주당 4시간)	개인위탁

※ 프로그램 운영 요일·시간 및 시간별 학생 구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**2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**

구 분	환불사유 발생일	환불금액	비고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	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	※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	수강개시 이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	
	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	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	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 (총 수강시간의 50%초과)	환불하지 않음	

### 3 자유수강권 운영

#### 1) 지원 목적

-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

#### 2) 지원 방법

-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자유수강권 지급

#### 3) 지원 대상 및 순위

##### ○ 1순위(우선지원대상자)

- 가) 기초생활수급자 자녀,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
- 나)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자녀 지원

##### ○ 2순위(소득에 따른 지원) : 중위소득 80% 범위에 속하는 자

##### ○ 3순위(학교장 추천)

- 가)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( 당해 연도 5월 31일자)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- 나)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: 1순위,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0% 미만

- 다) 1순위, 2순위를 합한 인원수가 10명 이하일 때 학교장 추천 지원 가능 학생 수는 1명으로 함

##### ○ 4순위(다자녀, 다문화 추천)

- 가)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(당해 연도 5월 31일자)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, 다문화 각각 지원

- 나) 다자녀 추천: 1순위,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0% 미만

- 다) 다문화 추천: 1순위,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0% 미만

- 라) 1순위, 2순위를 합한 인원수가 10명 이하일 때 다자녀, 다문화 추천 지원 가능 학생

수는 각각 1명으로 함

마) 다문화 추천: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, 2순위의 10% 미만

- (1)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함
- (2)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기관이란 전라북도에 있는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함

※ 학교장 추천 및 다문화, 다자녀 추천은 반드시 교육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, 지원 신청 학생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.

※ 중복 지원 제외 대상: 국립학교, 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대상 학생은 교육부(국립), 시도교육청(공·사립)에서 별도로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
<학교장 추천 시 증빙 서류>

선 정 기 준	제 출 서 류
○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	○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(사본)
○ 거주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	○ 경매진행통지서
○ 근로소득자로서 채권압류로 급여소득의 1/2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	○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
○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(가출 등)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	○ 가출신고확인서(파출소) ○ 주민등록말소등본(주민센터) 또는 통/반장 사실 확인서
○ 부양의무자의 일시적 질병·장애 및 희귀·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(의료비 지출 과다 포함)	○ 진단서 ○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
○ 신용불량자	○ 금융기관 확인서
○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	○ 폐업신고서
○ 시설수용 학생	○ 시설수급자 증명서
○ 다자녀, 다문화가정 자녀	○ 가족관계 증명서
○ 기타	○ 관련 증빙서류

4) 지원 금액: 1인당 연 60만원

- 1)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
- 2)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(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 불가)

5)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

- 학부모가 읍면동(또는 온라인)에 신청→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→학교에 통보, 학교(NEIS)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

신 청	접 수	조 사	대상자 결정
학부모	읍면동 주민센터 (행복e음)	소득·재산조사 (행복e음)	학교장 결재 (NEIS)

6) 사용 범위

가) 초등돌봄교실 급·간식비

나)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 수강료(강사료, 교재구입비, 재료구입비)

다)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

비(입장료, 대여료, 교통비 등)

라) 본교 또는 타교 및 공공기관, 각종직업훈련기관, EBS스스로배움터(온라인)의 모든 프로그램

7)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

○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

-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% 미만일 때 :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
-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% 미만일 때 : 경고
-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% 미만일 때 : 지원중지

\* 추후 프로그램 수강 희망 시 지원 가능